

kotra 통상정보

제46호 [15-46] 2015.3.11 Biweekly Report

주간 포커스

한-중 FTA 가서명

주요국 통상 이슈

- I. FTA · 통상정책
- II. 통관 · 수입규제
- III. TBT
- IV. 기타무역장벽

통상 캘린더



Contents

1 주간 포커스

한-중 FTA 가서명

2 주요국 통상 이슈

I. FTA · 통상정책

■ FTA 등 지역협정

- 우크라이나, EU와의 무역특혜협정 재검토 예정
- 에콰도르, 안데스공동체 탈퇴 가능성 언급

■ 무역 · 산업정책

- 인도, IT 업체에 10년간 면세 혜택 제공
- 인도, 자동차 부문 소비세 감면혜택 재개
- 미국, 환율조작 방지 법안 발의
- 우크라이나, 환율 방어 정책 추진중

II. 통관 · 수입규제

■ 통관절차

- 한국, 캐나다산 쇠고기 검역 중단조치

■ 수입규제

- 러시아, 외국 의료 제품 및 기기 기업 입찰 제한 법령 발표
- 미국, 쿠바산 제품 수입 제한 완화
- 몽골, 휘발유 수입세 인상 결정

■ 반덤핑 · 상계관세

- 미국, 호주 외 2개국 특정 비코팅지 반덤핑, 중국 등 1개국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 개시
- 우르과이, 온수기 반덤핑 조사 개시



Contents

Ⅲ. TBT

■ 기술규제

- 미국, 자동차 연비 측정기준 강화

■ 환경

- EU, 장난감 내 납 성분 제한 개정안 발표

Ⅳ. 기타무역장벽

■ 지식재산권

- 미국, 특정 LED 제품 제조업체 관세법 위반 조사 개시
- 중국, 월컴 반독점 조사 마무리

3 통상 캘린더



1 주간 포커스

한-중 FTA 가서명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www.fta.go.kr)

본 원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중 FTA' 관련 발표 자료를 일부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4.11.10(월)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 타결된 후, 4차례의 기술협의와 3차례의 법률검토 회의를 거쳐 ' 15.2.25(수) 한-중 FTA 가서명이 완료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한-중 FTA 협정문 영문본이 공개되었으며, 번역·검독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한글본도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투자 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KOTRA에서는 한-중 FTA의 개요와 협정문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I. 한-중 FTA 가서명 개요

□ ' 15.2.25(수), 한-중 FTA 가서명 완료

- ' 14.11.10(월)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 15.2.25(수) 한-중 FTA 가서명 완료

* 기술협의(4회) : ' 14.12.8-12 서울, 12.17-18 서울, 12.29-31 베이징, ' 15.1.14-18 도쿄

법률검토 회의(3회) : ' 14.12.23 베이징, 12.30-31 베이징, ' 15.1.22 베이징

- 장기적 유망품목 중심의 중국시장 개방, 농수산물 시장 보호와 수출기회 확대, 서비스·투자 개방 확대, 포괄적 규범 등을 포함해 한중 경제교류에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
- (후속일정) 가서명(영문) → 국민경제 영향 평가 → 협정문 번역 → 법제처 심의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정식 서명 (영문본·한글본·중문본) → 협상결과 국회보고 → 국회 비준동의 → 발효

〈한-중 FTA 협상일지〉

구 분		주요 협상내용
1단계 협상	1차 ' 12.5.14 (中 베이징)	- 협상운영세칙 (TOR : Terms of Reference) 확정 - 무역협상위원회 (TNC : Trade Negotiating Committee) 설치
	2차 ' 12.7.3~5 (제주도)	- 상품분야 품목군에 대한 정의와 기준에 대한 논의 개시 - 서비스와 투자 분야 작업반 개최
	3차 ' 12.8.22~24 (中 웨이하이)	- 상품을 민감도에 따라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
	4차 ' 12.10.30~11.1 (경주)	- 비관세 장벽 및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논의 개시
	5차 ' 13.4.26~28 (中 하얼빈)	- 서비스·투자 모델리티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의견 교환
	※ 한-중 정상회담(13.8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 합의	
	6차 ' 13.7.2~4 (부산)	- 상품 모델리티 및 협정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상당한 진전
2단계 협상	7차 ' 13.9.3~5 (中 웨이팡)	-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 합의 → 1단계 협상 마무리
	8차 ' 13.11.18~22 (인천)	- 상품은 양허 및 협정문 협상을 동시에 진행 - 원산지, 통관 등 여타 분야는 협정문안 협의
	9차 ' 14.1.6~10 (中 시안)	- 상품분야 양허수준 및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협상 * (韓)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요구 vs (中) 농수산 품목 개방확대 요구
	10차 ' 14.3.17~21 (일산)	- 상품분야 양허수준 및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협상 * (韓)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요구 vs (中) 농수산 품목 개방확대 요구
	※ 한-중 정상회담(14.3월) “한중 FTA 조기타결”에 대한 정당한 공감대 확인	
	11차 ' 14.5.26~30 (中 쓰촨성)	- 상품분야 2차 양허안(offer)을 교환하고, 양측 핵심 관심품목에 대해 2차 양허요구안(request) 교환
	※ 한-중 정상회담(14.7월) “한중 FTA 연내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에 합의	
	12차 ' 14.7.14~18 (대구)	- 서비스·투자분야 자유화 방식 (韓 네거티브 vs 中 포지티브)에 대한 원칙적 합의 도출 * 중국이 양자 FTA에서 네거티브 방식에 합의한 최초 사례
	13차 ' 14.9.22~26 (中 베이징)	- 상품분야 집중 협의를 진행하여 잠정 종합 패키지(안) 교환
	※ 한-중 정상회담(14.10월) “한중 FTA 연내타결 목표” 재확인	
	14차 ' 14.11.6 (中 베이징)	- 6개 분야 잔여쟁점 집중 논의
' 14.11.10 (中 베이징)		한-중 FTA 타결
' 15.2.25		한-중 FTA 가서명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II. 협정문 주요 내용

1. 상품 양허

□ 모델리티 자유화율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함으로써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시장 자유화에 성공

- (중국)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철폐,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
- (한국)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철폐, 품목수 92%(11,272개), 수입액 91%(736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

품 목 군	우 리		중 국	
	품 목 수	수 입 액	품 목 수	수 입 액
즉시	6,108 (49.9%)	418.5억불 (51.8%)	1,649 (20.1%)	733.7억불 (44.0%)
일반 품목 (NT)	5년	1,433 (11.7%) 31억불 (3.8%)	1,679 (20.5%)	58.3억불 (3.5%)
	10년	2,149 (17.6%) 173.3억불 (21.5%)	2,518 (30.7%)	312.5억불 (18.7%)
	소계	9,690 (79.2%) 622.8억불 (77.1%)	5,846 (71.3%)	1,104.5억불 (66.2%)
민간 품목 (ST)	15년	1,106 (9.0%) 79.5억불 (9.8%)	1,108 (13.5%)	219.2억불 (13.1%)
	20년	476 (3.9%) 34.1억불 (4.2%)	474 (5.8%)	93.75억불 (5.6%)
	소계	1,582 (12.9%) 113.6억불 (14.0%)	1,582 (19.3%)	312.9억불 (18.7%)
자유화율(NT+ST)	11,272 (92.2%)	736.4억불 (91.2%)	7,428 (90.7%)	1,417.4억불 (85%)
초민감품목(HST)	960 (7.8%)	71.3억불 (8.8%)	766 (9.3%)	250.1억불 (15.0%)
합계	12,232 (100%)	807.7억불 (100%)	8,194 (100%)	1,667.5억불 (100%)

□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r cut) 방식의 관세 철폐 방식으로,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차년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 시행

□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의 양측 시장 개방 결과

- (철강) 중국은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후판 등을 개방. 한국은 중소·중견 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
- (석유화학) 對中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3배 이상 큰 양국간 교역 현황을 고려하여, 중국의 일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 초산에틸 등 한국 중소기업체의 민감 제품은 보호

- (섬유) 對中 주력 수출품목(편직물) 및 유망품목(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국시장을 개방. 한국은 순면사, 의류(직물제·편직제), 모사, 면직물 등 민감한 품목은 부분감축 또는 양허제외
- (기계) ' 13년 약 56억불 규모의 對中 무역흑자를 기록한 분야로서, 중국은 자국 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기계 분야(포장기계, 환경오염 저감 장비 등)를 개방. 한국은 중소기업 제품인 기계 요소(볼 베어링 및 부품) 및 전동공구(전기드릴 및 기타) 등을 보호
- (자동차·부품)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한국은 현지 생산 진출 전략을 취함에 따라,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철폐로 영향은 제한적
- (전자전기) 중국은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및 의료기기, 가전 부품 등을 개방. 한국은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 시장을 중·장기 관세 철폐로 보호
- (생활용품) 중국은 콘택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내 수요 증대 품목을 포함한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 한국은 핸드백(기타가죽), 골프채 등 對中 수입액이 많은 일부 품목은 장기 (15~20년) 관세 철폐

* ' 13년 중국 생활용품 시장 규모는 한국(31조원)보다 10배 이상 큰 316조원으로 추정

□ 농수산 분야에 대한 양측 시장개방 결과

- (농업)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대상에서 제외. 중국의 전통적 민감품목(쌀, 설탕, 밀가루, 담배)을 제외하고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 최대 확보
 -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 자유화 (냉동고기, 과실류, 채소류는 10년내 개방하고 신선육류, 과채류 가공품 등은 20년내 개방)
 - 한국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을 모두 양허 제외하여 보호
- (수산업) 한국은 주요 수산물 보호, 중국은 100%(수입액 기준) 개방
 - 중국은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을 10년내 조기철폐
 - 한국은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등 국내 20대 생수품목을 모두 양허 제외하여 보호

2. 원산지

□ (규정) 특혜원산지 지위 부여를 위한 원산지 판정의 기준(rules) 규정

- 원산지 판정의 기본원칙*과 보충적 원산지기준** 등 특혜원산지 지위 부여를 위한 기준(rules) 규정

* ①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될 경우 ② 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③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PSR 충족 전제)

** 미소기준, 누적, 불인정공정, 대체재, 간접재, 직접운송 등에 대해 규정

- EEZ 기국주의, 섬유류 미소기준의 중량기준 인정 등 우리 기체결 FTA 원산지 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

□ (절차) 일반적인 특혜관세 신청 절차뿐만 아니라 수출입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특혜 관세 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 명시

- 미화 700불* 이하 수출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특혜관세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 중국 기체결 FTA의 기준이 대부분 600불 이하인 점, 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는 점을 감안하고서도, 비교적 높게 기준을 설정하여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의 혜택을 넓힘.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신청을 통해 특혜관세 적용 가능
- 한편, 불법적인 특혜관세 향유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마련, 특히 중국 기체결 FTA 최초로 직접 방문검증 절차 도입
- 원산지 관련 양국간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당국간 협의 절차 및 위원회 조항 마련

□ (개성공단)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하여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

-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여 우리의 기체결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 도출

* 한-EFTA : 267개, 한-인도 : 108개, 한-ASEAN, 페루, 콜롬비아 : 100개

-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①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와 ②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

— 기체결 FTA와 유사한 수준이나 비원산지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이 제외되어 기체결 FTA 규정에 비해 유리

* 한-EFTA, ASEAN, 인도, 페루, 콜롬비아 FTA 등 기체결 FTA에서는 『비원산지 투입 가치』로 규정되어 개성공단 임금, 수송비 등이 포함

** 원산지재료에 중국산 재료도 포함되므로 우리 업체의 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

-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를 통해 추후 한·중 양국의 북한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설치 가능성 확보

3. 서비스

- (서비스) 양측 모두 DDA 플러스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서비스시장 개방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분 야	반 영 내 용
법률	- 중국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공동 사업 가능 (상하이 FTZ에 한정)
건축/ 엔지니어링	- 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도 인정
건설	- 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도 인정 - 상하이 FTZ내 설립된 한국 건설기업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 비율 요건(외국 투자 50% 이상) 제한 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 수주 가능
환경	- 폐수,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 허용
유통	-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소매유통업체의 책 판매 허용
엔터테인먼트	-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 49% 지분 한국기업 허용

- (금융) 금융서비스 규제완화, 금융서비스 위원회 설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하여 양국 금융산업에 대한 시장접근 기반 개선
- (통신) 상대국의 망·서비스에 비차별적 접근 보장, 비차별적 상호접속 제공 의무, 교차보조 금지를 통해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 조성
- (자연인의 이동) 비자원활화, 상용방문자 등의 일시입국과 체류허용 요건 등을 규정했으며, 단순 인력의 입국·체류 관련 내용은 불포함
- 在中 주재원의 최초 2년 주재(당초 1년) 허용에 합의하여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
- 중국이 negative 방식으로 법규 및 제도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1단계에서 positive 자유화방식으로 규정하고, 후속협상을 통해 negative 자유화방식*으로 전환기로 합의

* 중국의 FTA 최초로 서비스 분야의 negative 방식 채택에 합의

** 후속협상은 본 협정 발효 2년내 개시하며, 개시 후 2년내 마무리

4. 기타분야

- 기타분야 주요 협상 결과

- (통관 및 무역원활화) 일관성(관세법령을 모든 세관에서 일관되게 집행하도록 보장), 원활화·투명성(통관 절차 원활화, 관련정보의 공개 및 질의응답 창구 지정), 관세위원회(FTA 이행을 위한 “관세위원회” 및 “통관 및 무역원활화 소위원회” 설치) 확보
- 상품의 반출시 전자적 서류제출, ‘48시간내 통관’ 원칙 및 ‘부두직통관제’를 명시함으로써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

- **(지재권)** WTO 지재권 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등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지재권 위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저작권·저작인접권 권리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였으며, 방송신호 보호 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을 강화하여 중국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외국의 유명상표 보호 강화를 규정하여 중국기업의 악의적인 상표선점이나 유사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실용신안권 분쟁시 근거자료 제출 등을 명시하여 중국기업의 권리남용을 방지
- **(경쟁)** 상대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시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방지 등 기업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고, 공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되므로 중국내에서 한국기업과 중국 공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짐
- **(관광)** 중국은 한국 관광회사의 중국인 해외여행 영업 신청을 장려하고 동 신청에 대한 허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약속하여 당국간 협의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기로 합의하고 이를 경제협력채터에 포함시킴
- **(TBT)** 전기용품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자동차 부품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화장품·의약품 허가신청절차 내국민 대우 부여 등을 통해 시험인증과 관련된 구조적 애로해소 가능
 -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제품 안전 보호강화와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SPS)** WTO/SPS 협정 적용 재확인, 위생검역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협정 이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최소한의 내용으로 규정
 -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이 불포함되어 WTO/SPS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 부담 없이 타결
- **(환경)**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 준수, 환경법 효과적 집행 등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협력 강화와 환경위원회 설치를 포함
 - 포괄적인 적용범위와 핵심적인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중국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환경법 집행, 다자환경협약 준수 등 다방면에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분쟁해결)**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 시한을 규정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 유도,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중개절차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

Ⅲ. 한-중 교역 현황 및 투자 현황

□ 한-중 교역 현황

- '92년 8월 수교 당시 63억 7,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교역액은 '13년에는 2,289억 2,000만 달러로 무려 34배 규모로 성장
- 중국은 '03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04년 이후부터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
- 한-중 무역규모의 확대는 '12년 세계경제침체로 인해 잠시 주춤했다가 '13년 대중국 수입이 전년대비 2.8% 증가한 830억 5,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무역흑자는 628억 1,7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7.3% 증가하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섬

〈대 중국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는 증감률,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9월)
총액	1,884.1 (33.7)	2,206.4 (17.1)	2,151.1 (-2.5)	2,289.2 (6.4)	1,717.3 (-)
대중수출	1,168.4 (34.8)	1,342.1 (14.9)	1,343.3 (0.1)	1,458.7 (8.6)	1,060.8 (-0.7)
대중수입	715.7 (31.9)	864.3 (20.8)	807.8 (-6.5)	830.5 (2.8)	656.5 (7.1)
무역수지	452.6 (39.5)	477.8 (5.6)	535.5 (12.1)	628.17 (17.3)	404.3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

- 對중 수출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對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선에 달함.
- '13년 주요 수출 품목은 직접회로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순
- '09년부터 중국정부가 실시한 내수부양 조치에 힘입어 직접회로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주요 對중국 수출 품목 현황〉

(단위: 억 달러)

순 위	2012		2013		2014(1분기)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1	평판디스플레이	199.72	직접회로반도체	185.39	직접회로반도체	50.88
2	직접회로반도체	144.96	평판디스플레이	180.39	평판디스플레이	39.93
3	합성수지	71.13	합성수지	72.25	합성수지	17.92
4	석유화학 중간원료	45.6	석유화학 중간연료	62.12	자동차부품	14.92
5	자동차부품	44.58	자동차부품	55.70	석유화학 중간연료	14.54
6	기초유분	39.56	경보신호기	54.26	무선통신기기 부품	13.34
7	무선통신기기 부품	37.92	무선통신기기 부품	50.26	기초유분	12.52
8	제트유 및 등유	37.92	기초유분	44.62	경보신호기	10.84
9	석유화학 합성원료	36.69	제트유 및 등유	33.23	제트유 및 등유	6.54
10	경보신호기	36.25	석유화학 합성원료	27.54	인쇄회로	5.6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입 품목

- '13년 주요 수입 품목은 직접회로반도체, 기타 정밀화학연료, 배전 및 제어기, 평판디스플레이 순서로 나타남
- 한국의 對중국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이 상당수 일치하는데 이는 한중간 교역구조가 산업간 교역에서 산업 내 교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줌.

〈주요 對중국 수입 품목 현황〉

(단위: 억 달러)

순 위	2012		2013		2014(1분기)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1	직접회로 반도체	40.7	직접회로 반도체	43.0	직접회로 반도체	10.92
2	평판 디스플레이	30.6	기타 정밀화학연료	28.0	무선통신기기 부품	10.16
3	기타정밀화학 원료	28.3	배전 및 제어기	26.7	컴퓨터	8.00
4	컴퓨터	25.6	평판 디스플레이	25.7	기타 정밀화학연료	7.47
5	배전및제어기	22.6	컴퓨터	25.3	평판 디스플레이	6.34
6	전선	19.6	직물제의류	21.1	열연강판	6.25
7	직물제의류	19.1	전선	20.5	전선	5.29
8	개별소자 반도체	18.5	개별소자 반도체	19.3	개별소자 반도체	5.20
9	열연강판	18.0	무선통신기기 부품	16.3	직물제의류	4.86
10	철구조물	17.3	열연강판	15.8	철구조물	6.6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중 투자 현황

-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92년 한·중 수교 이후 큰 폭으로 증가, '02년부터 미국을 능가하는 한국의 제 1위 투자대상국으로 부상
- 중소기업 위주의 투자, 광범위한 산업으로의 투자, 특히 산동성 등 환발해 지역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

〈대 중국 투자 추이〉

(단위: 백만불, ()는 신고건수, 신고 기준)

구 분	2012	2013	2014(9월)	누 계 (~'14.9)
중국의 對한국 투자	727 (512)	481 (402)	1,033 (372)	5,975 (8,812)
한국의 對중국 투자	6,532 (1,856)	4,809 (1,880)	2,428 (1,211)	64,109 (49,792)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Ⅳ. 한-중 FTA 의의

□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 완성

- 美·中·EU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체결 (10대 경제체 중 유일)
- FTA 체결국의 시장 규모 합계가 세계 5위에서 3위로 도약 (73.45%)
-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62.94%로 제고

□ 중국이라는 거대·성장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기회 확보

- 중국 GDP(10.4조달러)는 한국(1.4조달러)의 7배 이상 : 세계의 공장 & 시장
 - 중국은 매년 GDP 7% 이상 성장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
- 국내 내수형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기업화
 - 기존 소재·부품 외에도 패션·영유아용품·의료기기·생활가전 등 수출 확대 기대
 - 기술력·디자인·브랜드를 보유한 혁신제품·융합제품에 새로운 기회 부여
-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이 對中 수출 730억불, 對中 수입 418억불로서, 한-미 교역액 전체(1,036억불)를 초과
 - 최장 20년내 관세철폐 대상 품목 금액 : 한국 736억불 < 중국 1,417억불(약 2배)
- 자유화 최종 달성 시, 對中 수출의 관세 절감액이 연간 54.4억불에 달함

□ 국내 농수산 시장 최대한 방어하며 중국 시장 진출 기회 마련

- 우리의 기체결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 보호
 - * 한국의 FTA 중 농수축산물 자유화율 비교 (품목수기준/수입액기준, %)
한-미 FTA (98.3/92.5), 기체결 FTA 10개 FTA 평균 (78.1/89.0), 한-중 FTA (70/40)
- 중국 농수산물의 91%, 수산물의 99%를 자유화(품목수 기준)하여 한국산 고급·안전 농수산식품의 對中 수출 기회 확보

□ 수출·투자 기업의 손톱 밑 가시 등 비관세장벽 해소

- 통관·시험인증·지재권 등 분야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통관) 48시간 통관 원칙, 700불이하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일관적인 세관 집행 원칙
 - (시험인증)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시험인증기관 상호 인정 협력 강화
 - (지재권) 외국 유명상표 보호 강화,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 권리구제 장치
- 주재원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확대, 중국 정부 내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 비관세조치 시행 전 유예기간 확보, 비관세조치 분쟁해결 중개 절차 도입

□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개방 (도시화 관련 산업, 문화, 유통 등)

- 건설 · 환경 · 엔터테인먼트 · 유통 · 법률 등 유망 시장 일부 개방
- 네거티브 방식에 기반한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 기회 확보

□ 한-중 관계 심화와 문화 · 관광 교류 활성화

- 한-중 FTA는 경제 분야에서의 제2의 수교이자, 양국 경제관계 규율의 제도적인 틀
- 중국인에게 한국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구축 → 금전 이상의 가치
- 중국인 방한 관광객 증가는 국내 서비스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610만명, 2020년에는 1,000만명에 달할 전망
- 저작권 · 저작권접권 보호 수준 제고로 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및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

- 한-중 FTA는 아태지역 경제 통합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마련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생산 제품에도 원산지 지위 인정
 -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키로 하여 우리의 기체결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
- 한-중 양국간 인적 · 물적 교류의 확대는 한반도 평화 안보에 도움

I. FTA · 통상정책

□ (지역협정) 우크라이나, EU와의 무역특혜협정 재검토 예정

○ 우크라이나, EU와의 무역특혜협정* 하반기 중 재검토 예정

* 무역특혜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 PTA) : WTO 체제하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일방적으로 양허할 경우 무역특혜가 허용되는 것을 지칭하며, 지역무역협정 중 가장 초기단계임

- (배경) '14년 4월부터 EU와의 무역특혜협정 체결중
- (내용) 관세 특혜 품목 확대에 대한 재검토를 할 예정이며, 이는 '16년 우크라이나-EU의 FTA 정식 협정을 위한 재검토이기도 함.

(출처 : 키예프 무역관 종합)

□ (지역협정) 에콰도르, 안데스공동체 탈퇴 가능성 언급

○ 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안데스공동체(CAN)* 탈퇴여부를 고민 중

* 안데스공동체(Comunidad Andina de Naciones) : 회원국 간 10년 이내 관세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라틴아메리카 공동시장 형성을 위하여 점진적인 지역통합을 추진중임. 정회원국은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4개국이며 준회원국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파나마, 칠레 등

- (내용) 에콰도르 정부는 콜롬비아, 페루에 적용하던 세이프가드 조치를 2월 말 해제하기로 했으나 2월 25일 이를 연기하겠다고 밝힘
- 전 대외무역부 장관 프란시스코 리바데네는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조치 이전부터 안데스 공동체 탈퇴여부를 고민 중이었으며, 대통령과 세이프가드 등 통상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발표
- 에콰도르무역연합회(Fedexpor) 및 키토상공회의소는 안데스공동체 탈퇴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냄.
- '11년 안데스 공동체를 탈퇴한 베네수엘라의 경우, '06년에 탈퇴 선언을 한 이후 탈퇴 승인을 받기 위해 5년이 소요됨.
- 현재 에콰도르의 對안데스공동체회원국 주요 수출품은 참치통조림, 자동차 및 부품, 사탕 및 초콜릿, 새우 등임.

(출처 : El Comercio 2.25, El Universo 2.20 ; 키토 무역관 종합)

□ (무역·산업정책) 인도, IT 업체에 10년간 면세 혜택 제공

- 인도 정보통신기술부, IT 업체에 대해 10년간 면세 혜택 제공
 - (개요) 인도 내 모바일 산업을 부흥시키고 'Digital India' 와 'Make in India'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모바일 및 태블릿 제조업체에 10년간 면세 혜택 제공
 - (내용) 인도에서의 모바일 기기 수요량이 ' 15년 말까지 1조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생산량은 1/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해외 업체들이 점차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추세
 - 인도 정보통신기술부는 기업들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여 신규 투자를 늘리고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예정

(출처 : Weekly Economic Bulletin ; 뉴델리 무역관 종합)

□ (무역·산업정책) 인도, 자동차 부문 소비세 감면혜택 재개

- 인도 정부, 판매량 증가 위해 자동차 부문 소비세 감면혜택 재개 예정
 - (배경) 소비세 감면혜택으로 인해 GM India, Ford and Mahindra의 1월 매출액이 감소했으며, 인도 자동차 시장 내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두 회사 Maruti Suzuki와 Hyundai 또한 한 자릿수 성장률에 그침
 - (내용) 이에 인도 정부는 (소형차, 스쿠터, 오토바이 등) 12%→8%, (SUV) 30%→24%, (중형차) 24%→20%, (대형차) 27%→24%로 감면할 계획

(출처 : The New Indian Express ; 뉴델리 무역관 종합)

□ (무역·산업정책) 미국, 환율조작 방지 법안 발의

○ 미국 의회, 환율조작 방지 법안 발의

- (내용) 미국 상무부가 시장개입으로 인해 달러 대비 자국 환율이 저평가된 국가들의 對미 수출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계관세를 부과
- 일부 의원들은 무역촉진권한*법안에 타국 환율조작 방지 조항을 첨부하는 방안을 고려중

*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국제 무역 협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제도.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승인 또는 부결만을 결정할 수 있음.

- 하원의원들은 환율 조작에 대한 대책 없이는 향후 통상 협정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환율 조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됨.

(출처 : 워싱턴 무역관 종합)

□ (무역·산업정책) 미국, 군사용 무인항공시스템 수출 허용

○ 미국 국무부, 일부 국가에 군사용 무인항공시스템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 (2.17)

- (내용) 드론*에 대한 모든 수출은 정부간 대외군사판매**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최종 용도를 수입조건으로 함.

* 드론(Drone) :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 uninhabited aerial vehicle)의 총칭.

**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 : 미국 정보가 품질보증을 한 군사 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제도로 미국 정부가 무기를 대신 구입하여 넘기면 동맹국이 추후에 해당 비용을 지급함.

- 수입국은 국제인권법과 자위권 발동과 같은 국제법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드론 사용이 가능함.
- 자국 내의 불법 감찰 및 불법 무력 사용을 위한 드론의 활용 및 최소 300km 비행거리에 500kg 이상의 무기를 적재 가능한 대형 무인기는 수출에서 제외함.

(출처 : 워싱턴 무역관 종합)

□ (무역·산업정책) 우크라이나, 환율 방어 정책 추진중

- 우크라이나 정부, 환율 방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
 - (배경) ' 15.2.5일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채택한 시장변동환율제로 인해 현지화가 2월 5일 이전기준 16그리브나/달러에서 2월 25일 기준 34그리브나/달러로 현지화 가치가 급락함.
 - 우크라이나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임.
 - ① 수출에 의한 외환 유입 확대를 위해 바터 무역* 전면 금지 ② 5만 달러 이하의 교역을 위한 시중은행 대리 환전의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 획득 의무화 ③ 50만 달러 이상의 교역거래는 반드시 LC 거래로 진행

* 바터 무역 (barter trade) : '물자의 수출과 수입을 하나의 교환방법으로 상호결부시키는 무역방식' 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방법은 ①백투백(back to back) : 거래하는 양자가 동시에 신용장을 개설 ② 에스크로(escrow) : 먼저 수입한 측이 그 대금을 외환은행에 적립하고, 후에 수입하는 측은 그 계정금액으로 결제에 총당 ③ 토머스, 역토머스 : 일방이 수입신용장을 발부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에 수입한다는 보증장 발부 로 3가지 방식이 있다.

(출처 : 우크라이나 Interfax ; 무역관 현지조사 종합)

Ⅱ. 통관 · 수입규제

□ (통관절차) 한국, 캐나다산 쇠고기 검역 중단조치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캐나다 광우병 발생으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 중단 조치
 - (배경) ' 15.2.13일 캐나다 알버타주의 소에서 광우병 감염사실 발견
 -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자세한 사항을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감염된 소가 도축, 가공,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 농림부 장관은 금번 광우병 사태가 캐나다 소고기 수출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수출을 지속할 계획임.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역 중단조치*를 취했으며, 추가 정보를 파악하여 수입 제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
- * 검역이 중단되는 경우, 수입은 가능하나 검역이 재개될 때까지 검역소 창고에 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유통은 불가능함

(출처 : 밴쿠버 무역관 종합)

□ (수입규제) 러시아, 외국 의료 제품 및 기기 기업 입찰 제한 법령 발표

- 러시아 정부, 외국 의료 제품 및 기기 기업이 러시아 입찰 참여에 제한하는 법령 발표(2.6)
 - (배경) ' 14년 초 러시아 정부의 의료 부문 입찰 참가 기업 중 23%만이 러시아 기업들이었으며 수술용품 부문에서는 5%만이 러시아 제품이었음.
 - 러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루블화의 환율이 ' 14년 초에 비해 달러당 33루블에서 66루블로 2배가 급등하면서 외국산 의료 제품 수입에 차질이 생김.

〈연도별 의료 제품 및 기기 수입 규모〉

(단위: 백만달러, %)

순위	국명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13/12
	전 세계	2244.2	2946.4	2382.2	100	100	100	-19.1
1	독일	542.3	769.3	587.7	24.1	26.1	24.6	-23.6
2	미국	435.3	534.0	465.8	19.4	18.1	19.5	-12.7
3	중국	252.0	331.9	287.4	11.2	11.2	12.0	-13.4
4	일본	249.8	368.7	200.4	11.1	12.5	8.4	-45.6
5	이탈리아	96.7	123.2	94.2	4.3	4.1	3.9	-23.5
6	한국	104.3	143.2	92.6	4.6	4.8	3.8	-35.3
7	스위스	74.3	95.5	89.7	3.3	3.2	3.7	-6.1
8	프랑스	62.1	60.4	64.2	2.7	2.0	2.7	6.2
9	네덜란드	46.9	69.7	55.9	2.0	2.3	2.3	-19.7
10	영국	43.6	50.7	53.4	1.9	1.7	2.2	5.3

자료원: 러시아 관세청

- (내용) 의료 부문의 정부 입찰에서 2개사 이상의 러시아 기업이나 EEU회원국 * 기업이 참가 신청할 경우, 다른 외국 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EEU 회원국 :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 (해당 품목) 냉동기기, 엑스레이, 바늘, 마스크, 가위, 시약, 의료복 등 총 40개 품목

(출처 :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 (수입규제) 미국, 쿠바산 제품 수입 제한 완화

- 미국 국무부, 쿠바산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면서 수입 제한을 완화(2.13)
 - (내용) 동물, 식물, 식품, 광물, 화학품, 섬유, 주류, 담배, 기계, 교통수단, 무기 및 탄약을 제외한 쿠바 민간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
 - 수입 시 쿠바 수출업자가 쿠바 당국과 무관한 개인 사업자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입 제한 또한 완화했으나, 사회주의 경제 체제인 쿠바 내에서 미국 수출을 시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출처 : 워싱턴 무역관 종합)

□ (수입규제) 몽골, 휘발유 수입세 인상 결정

- 몽골 정부, 예산 충당 위해 휘발유 수입세 인상 결정
 - (배경) 휘발유 수입세 인상으로 금년도 예산 세입이 약 1.1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내용) 1톤당 휘발유 인상가격을 옥탄가* 90미만의 휘발유는 약 127달러, 옥탄가 90 이상인 휘발유는 약 131달러, 디젤유는 약 134달러로 확정했으며, 석유 시세가 40달러보다 상승시 휘발유 수입세를 인하할 예정
- * 옥탄가(Octane Number) : 휘발유의 고급 정도를 재는 수치로, 가솔린이 연소할 때 이상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를 나타냄.
- 대부분의 물품을 수입하는 몽골은 최근 2년간 약 40%의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두 자릿수 상승을 지속중인 상태에 동 조치로 인해 몽골 국민들의 생계곤란의 우려가 커짐.

(출처 : Unuudur / 울란바토르 무역관 종합)

□ (반덤핑 · 상계관세) 미국, 호주 외 2개국 특정 비코팅지 반덤핑, 중국 등 1개국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 개시

- 미국 상무부, 호주 · 브라질 · 포르투갈산 특정 비코팅지(Uncoated Paper)에 대해 반덤핑, 중국 · 인도네시아산 비코팅지에 대해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 개시 (2.11)
 - 제소업체 : United Steel사, Paper and Forestry사, Rubber사, Manufacturing사, Energy사,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USW)사, Domtar사, Finch Paper LLC사, Packaging Corporation of America사, P.H. Glatfelter사(PA)
 - 해당품목 : 특정 비코팅지(Certain Uncoated Paper)
 - 해당품목 HS코드 : 4802.56.1000, 4802.56.2000, 4802.56.3000, 4802.56.4000, 4802.56.6000, 4802.56.7020, 4802.56.7040, 4802.57.1000, 4802.57.2000, 4802.57.3000, 4802.57.4000, 4802.62.1000, 4802.62.2000, 4802.62.3000, 4802.62.5000, 4802.62.6020, 4802.62.6040, 4802.69.1000, 4802.69.2000, 4802.69.3000, 4811.90.8050, 4811.90.9080
 - (나라별 덤핑 마진율) (호주) 49.90~222.46%, (브라질) 86.9~172.7%, (중국)

243.65~271.87%, (인도네시아) 12.08~66.82%, (포르투갈) 2.23~22.59%

- 중국과 인도네시아에는 미소마진*의 보조금율이 예상됨.

* 미소마진(de minimis) : WTO 협정상 미소마진 (선진국 1%, 개발도상국 2%) 시에는 상계관세 부과 없이 조사 종결

- (' 15.3.9) ITC 예비판정, (' 15.4.16) 미국 상무부 보조금 예비 판정, (' 15.6.30) 미국 상무부 덤핑 예비판정 및 보조금 최종 판정, (' 15.8.14) ITC 보조금 최종 판정, (' 15.8.21) 상무부와 ITC, 상계관세 부과 명령 하달, (' 15.9.14) 미국 상무부 덤핑 최종 판정, (' 15.10.28) ITC 덤핑 최종 판정, (' 15.11.4) 상무부와 ITC,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 하달

(출처 : 워싱턴 무역관 종합)

□ (반덤핑 · 상계관세) 우르과이, 온수기 반덤핑 재심 조사 개시

- 우르과이 정부, 중국산 110L 이하의 가정용 온수기에 대해 반덤핑 재심 조사개시 공고(1.27)
- 해당품목 HS코드 : 8516.10-0010
- (' 10.7월) 반덤핑 조사 개시, (' 12.3월) 최종판정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Ⅲ. TBT

□ (기술규제) 미국, 자동차 연비 측정기준 강화

○ 미국 환경 보호청(EPA), 자동차 연비 측정기준 강화

- (내용) 미국 환경 보호청은 10년 만에 자동차 연비 측정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에 대한 안내문*을 자동차 업계에 전달함.

* 안내문 원본 : <https://www.epa.gov/otag/datafiles/cd1504.pdf>

- EPA는 자동차가 시속 약 115km로 주행하다 정차하는 과정에 대한 시험 기준을 강화

* 연비 측정에 차용되는 차량은 신차가 아닌 4,000마일(약6,437km) 이상 주행한 차량을 사용하며, 시험 차량은 30분 동안 시속 약 80km로 주행해 사전 예열 절차를 거쳐야 함.

- 동 규칙은 2017년형 모델부터 적용되며, 규칙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적용됨.
- 명확한 기준 제시로 인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보다 더 정확한 연비 수치 측정이 가능해질 것이며, 자동차 업계가 EPA 연비 기준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워싱턴 무역관 종합)

□ (환경) EU, 장난감 내 납 성분 제한 개정안 발표

○ EU 집행위원회, 장난감 내의 납 성분 제한 개정안 발표

- (배경) ' 15.1.14일 EU 집행위는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 내 납 성분을 제한하는 개정안 초안을 발표
- 제한 수치량은 네덜란드 국립 공중 보건환경연구소(RIVM), 보건·환경 리스크 과학 위원회(SCHER)에서 권고한 일일 허용섭취량을 기준으로 산출함.
- ' 13.3.22일 유럽식품안전청(EFSA)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와 유럽화학물질청(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은 납의 일일 허용 섭취량 대신 아이들의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벤치마크 용량 한계(BMDL)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내용) EU 집행위원회는 장난감 내의 납 제한 수치를 벤치마크 용량한계로 적용하기로 하고 기존 지침을 아래 표와 같이 개정함.

- － 동 개정 지침은 초안이 발효되면, 관보 공포일 20일 이후부터 적용됨.

〈개정된 지침에 따른 납 제한 수치〉

(단위: mg/kg)

제한 수치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우며, 분상 혹은 접이식 장난감 소재 (Dry, Brittle, powder-like or pliable toy material)	액체 또는 끈끈한 장난감 소재 (Liquid or sticky toy material)	스크랩 오프 소재 (Scraped-off material)
개정 전	13.5	3.4	160
개정 후	2.0	0.5	23

(출처 : 브뤼셀 무역관 종합)

IV. 기타무역장벽

□ (지식재산권) 미국, 특정 LED 제품 제조업체 관세법 위반 조사 개시

- 미국 ITC, 특정 LED 제품 제조업체에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개시(2.12)

* 관세법 제 337조 :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중 하나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나, 지적재산권 규정을 위반한 외국제품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임.

- (내용) Cree사는 ITC에게 피소업체들의 상품에 대해 수입 배제명령과 중지명령 하달을 요청
- (제소업체) Cree사
- (피소업체) 미국 Feit Electric사, 중국 Feit Electric사, 대만 Unity Opto Technology사, 미국 Unity Microelectronics사

(출처 : 워싱턴 무역관 종합)

□ (지식재산권) 중국, 쉔컴 반독점 조사 마무리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쉔컴 반독점 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사 결과와 처벌 내용 발표(2.10)

- (배경) 쉔컴이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휴대폰 가격에 5%에 달하는 특허수수료를 받고 불합리한 라이선싱을 실행했으며 특허권을 끼워 팔았음.
- (내용) 중국 당국은 쉔컴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약 9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으며 몇 사항을 정정하기로 합의함.
- (쉔컴이 정정해야 할 사항) ① 휴대폰 가격의 65%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3.5~5.0%의 특허 수수료 징수 ②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불합리한 라이선싱 금지 ③ 특허 끼워 팔기나 기타 불합리한 협의 금지
- 특허 수수료 정책이 변경되면서 특허보유량에 따라 중국 제조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림. 특허권 보유량이 많은 화웨이와 ZTE는 수혜자가 될 것이며 반대로 특허권 보유량이 적은 샤오미는 피해가 예상됨.

(출처 : 베이징 무역관 종합)

02 통상 캘린더

2015/FEBRUARY

한 : 한국 미 : 미국 WTO : WTO EU : EU
중 : 중국 일 : 일본 기타 : 기타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1	2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2.2, 브뤼셀)	3	4	5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2.5, 브뤼셀)	6	7
8	9 EU EU 의회 본회의 (2.9-12, 스트라스부르) EU EU 국제관계 위원회 회의(2.9, 브뤼셀)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2.9-12, 스트라스부르) 기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 (2.9, 이스탄불) 기타 제 7차 RCEP 공식협상 (2.9-13, 방콕)	10 WTO 무역정책 리뷰 : 브루나이(2.10-12)	11	12	13	14
15	16 WTO WTO 연례 의회 회의(2.16-17, 제네바)	17	18	19	20 WTO WTO 정책회의 (2.20)	21
22	23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2.23-24, 브뤼셀) WTO 분쟁해결기구(DSB)회의	24	25 EU EU 의회 본회의 (2.25, 브뤼셀)	26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2.26, 브뤼셀)	27	28

03 통상 캘린더

2015/MARCH

한: 한국 미: 미국 WTO: WTO EU: EU
중: 중국 일: 일본 기타: 기타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1	2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3.2, 브뤼셀)	3	4	5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3.5, 브뤼셀)	6	7
8	9 EU EU 의회 본회의 (3.9-12, 스트라스부르)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3.9-12, 스트라스부르) WTO 무역정책 리뷰 : (3.9-11)	10	11	12	13	14
15	16 EU EU 국제관계 위원회 회의(3.16, 브뤼셀)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3.16-20, 브뤼셀)	17	18	19	20	21
22	23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3.23-24, 브뤼셀)	24 WTO 무역정책 리뷰 : (3.24-26)	25 EU EU 의회 본회의 (3.25, 브뤼셀) WTO 분쟁해결기구(DSB)회의	26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3.26, 브뤼셀)	27	28
29	30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3.30-31, 브뤼셀)	31				

『중소기업 50대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발간

복잡한 해외인증 때문에 힘드셨대요?

KOTRA와 함께라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50대 수출유망품목을 선정,

수출 상위 15개국 인증제도 및 인증대행 컨설팅기관 조사 진행

Globalwindow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54개 품목, 727개 인증정보 수록

30,035개의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54개 품목에 대한
총 727개의 인증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의 : KOTRA 통상지원총괄팀 (02-3460-7746)

*인쇄가능 파일 배포



중소기업
50대수출
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WEB으로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보고서 다운로드 : [글로벌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 연구보고서 - 상품산업]

② 품목별 검색 : [상품-인증 - 해외인증제도/컨설팅사] 카테고리에서 열람 가능

01

글로벌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접속
[상품-인증] - [해외인증제도] 클릭

02

[업종] 탭에서 해당 업종 선택

03

[품목코드] 탭에서 해당 품목코드 선택

04

해당 품목, 국가별 해외인증컨설팅사
정보 열람 가능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